

안산시장학금조례안

의안 번호	1163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종전에 시장학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금리인하 등 사회 경제여건의 변화 등으로 장학사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드러나는 등 동 제도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종전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장학금은 애향장학금과 산업체근로자장학금으로 구분함 (안 제3조).
- 나. 애향장학금은 성적우수자, 근로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 다. 산업체근로자장학금은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자중에서 선발하여 시장이 관내 대학(교)에 전문교육을 위탁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 라. 장학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내지 제8조).
- 마. 장학생의 최종 선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명시함 (안 제11조).
- 사. 장학생의 예산규모 및 지급인원 등을 매년 이를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연269,330천원(내역 별첨)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3. 5. 19. ~ 2003. 6. 9.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장학금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복지증진 및 우수인력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등을 선발하여 안산시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말한다.
2. “산업체근로자위탁”이라 함은 시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 관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에 따른다)에 6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중에서 선발하여 시장이 시 관내 대학(교)에 전문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애향장학금, 산업체근로자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 (장학금 지급대상) ①애향장학금은 장학금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와 함께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우수장학생 : 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성적 우수자(신입생은 입학성적순) 및 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교) 신입생(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학능력평가 고득점자 또는 4년제 대학 수시입학생으로 출신 학교장이 추천한 자
 2. 근로장학생 : 장학생 선발일 현재 시관내 기업체에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재산세 10만원이하 납부자에 한한다)의 자녀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3. 도울장학생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녀 및 기타 불우학생중 학업성적이 학년 전체 100분의 50이내로 출신 학교장이 추천한 자
- ②산업체근로자위탁장학생은 출신학교장, 상공회의소회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기로 확정되었거나 받은 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매년 장학금의 지급 규모·대상·범위 및 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장학금 지급계획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등 요건을 갖추어 시장이 정한 기한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① 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장학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시의회의장·시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정지 등의 심사(의)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장학생 선정) 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10조 (장학금의 지급) 애향장학금은 1년 단위로 선발 지급하고, 산업체근로자위탁장학금은 입학시 선발하여 졸업시까지 지급한다.

제11조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2. 퇴학·정학·휴학처분 등을 받거나 군입대, 건강장애등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

단하거나 또는 계속할 수 없을 경우(단 산업체근로자위탁장학생의 경우 병역 의무 이행 후 복학은 제외한다)

3. 장학금지급 결격 사유 발생등으로 추천권자의 정지신청이 있을 경우
4.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격이 없어진 경우
5. 근로자 자녀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관내 기업체에 퇴사한 경우
6. 산업체근로자위탁장학생의 경우 제2조제2호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경우
(관내 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장학생의 재원 및 지급액등) ①장학생의 재원은 매년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규모 및 장학금 지급 인원은 전년도 지급 실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장학금 지급액은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전액을, 대학생의 경우 수업료의 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타 법령에 의하여 수업료를 지급 받는 자는 수업료 대신에 학교운영지원비, 교재비 및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안산시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등은 일반회계로 이입한다.

④(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안산시장학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안산시장학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주민자치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담당·팀장 직위·성명	시정담당 변한식
	담당자 성명·전화	송은선 (행정 3453)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차. (생략)

3. ~ 6. (생략)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28조 (장학제도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안산시장학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163
----------	------

제안년월일 : 2003. 9. 24.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애향장학금의 지급대상자에 관외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좀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일부 불합리한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합리적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자

- 장학금 지급 대상 우수장학생에 “관외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시킴(안 제4조제1항)
-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중 “시장·시의회의장”을 “부시장·시의회 부의장”으로 수정함. (안 제6조)
- 사업체 근로자 위탁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장학생 선발시부터”로 수정함.(안 제10조)

안산시장학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장학금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시 관내 고등학교 · 관외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시장 · 시의회의장”을 “부시장 · 시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입학시 선발하여”을 “장학생 선발시부터”로 한다.

신 구 대 비 표